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083
2024.5.20.

■ 판례 동향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제9031호 해설 및
쟁점 사항 연구

■ 개정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
(베트남)

정부, 6월부터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차단



9 772799 725006
ISSN 2799-7251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이소영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5월 20일(통권 제2083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정부, 6월부터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차단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

- 20** 관세행정안내
FTA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26** 질의응답사례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 변경

판례동향

- 28** 관세판례해설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 39** 품목분류해설
제9031호 해설 및 쟁점 사항 연구
- 56** 세번 바로잡기
건조 과실 대추
- 57** 상식 밖의 상품학
韓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성공

최신개정법령

- 60** 고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 61** 공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63** 입법예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정부, 6월부터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차단

유모차·완구·생활용품 대상 위해제품 관리·소비자 구제제도 강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어느 순간 연말이면 미디어를 도배하는 단골 소재가 됐다. 생산기업과 유통업체가 한 해 재고를 소진할 목적으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아치우는 이 행사에 소비자들이 열광했고, 아마존·알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지구적 행사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가성비를 앞세운 소비를 위한 해외직접구매, 즉 ‘직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 1,000억원에서 2023년 6조 8,000억원으로 33%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1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순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가 확대됨에 따라 위해 물품 국내반입에 따른 안전 문제, 불량품 유통에 따른 반품·환불 절차 구제 미흡 등 소비자 피해, 각종 세제·인증규제 미적용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 7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출범시키고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 안전 직결 제품, KC 인증 없거나 신고·승인 받지 않을 시 해외직구 금지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됐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KC 인증제도를 활용해 국민 안전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물놀이 기구, 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전기욕조, 배터리 등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이다.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 모니터링과 유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통해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피해자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부과 등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국내에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월 16일부터 가동됐으며, 이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유통 플랫폼 보급·역직구 확대, 면세·통관 시스템 개선 등 기업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폴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유통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역직구를 확대하고자 우리 유통·제조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해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의도적 분할과 면세 통관 후 상용으로 판매하는 등의 소액면세 악용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통관단계에서의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통관 서식 기재항목 확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 구축,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 연내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 근거 위해제품 차단 실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차단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직구 이슈의 특성상 이번 발표 이후에도 해외직구 T/F를 지속 가동해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하구현 기자 |

항공 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1시간 → 30분' 단축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그동안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입항 30분 전까지로 완화된다. 또 하역제한 대상물품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사항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개정된 「관세법」 제140조 제7항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 하역 장소, 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특송물품과 검사대상화물의 하선장소를 명문화했다.

특송물품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특송업체 자체 시설을 하선장소로 규정했다.

검사대상화물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가 하선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된다.

이어 하역제한 대상물품을 규정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하역 제한을 요청하는 품목은 하역이 제한된다.

아울러 항공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제출도 완화된다. 이는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당시 적극행정위원회는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적극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항공 특송화물의 증가로 항공사 등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이 2년간(2023년 기준) 4,700여건에 달해 업계 부담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 중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30분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해 ‘선복’을 ‘적재공간’으로, ‘시봉’을 ‘봉인 실시’, ‘선(기)용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전화(042-481-7827) 또는 팩스(042-481-7819), 이메일(kea518@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하세은 기자 |

도마뱀·거북 등 파충류 수입 시 꼭 검역받으세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역 신청은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서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역은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야 하나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할 경우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출입국·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韓·美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5월 15일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개통으로 5월 20일부터 美 세관에 접수된 한국産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은 美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美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 가능한 시스템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동안 수출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으나,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돼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하구현 기자 |

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월 14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으로 발동 권한은 미국의 USTR이 갖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對中 수입의 약 4%에 해당하는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産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얻을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美의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위, KBSI 손잡고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속도·공신력 ↑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3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KBSI는 국내 분석과학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전문적인 분석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무역위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인력의 기술적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은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BSI 양성광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한우·육우·한우송아지·낙두' 선정

농림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예고 … 6월 3일까지 의견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농림부고시)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6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 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올해에는 농업인 등의 신청 품목 등 총 106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육우·한우송아지·낙두 4개 품목이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낙두 58.7%다.

농식품부는 6월 중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 검증과정을 거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으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9, kys1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김성은 기자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

(단위 : 원/kg, 원/마리, 톤, %)

구 분		국내산 평균 가격	총 수입량	지급기준 충족 FTA 체결국 수입량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	수입 기여도
				EU(2011.7.1)	미국(2012.3.15)	캐나다(2015.1.1)		
한우 소고기	기준값	17,062	451,923	302	241,334	8,265	447,371	29.3
	2023	16,628	472,888	528	245,686	14,023	467,339	
	변화율	-2.5	4.6	74.8	1.8	69.7	4.5	
육우 소고기	기준값	9,502	451,923	302	241,334	8,265	447,371	29.3
	2023	9,369	472,888	528	245,686	14,023	467,339	
	변화율	-1.4	4.6	74.8	1.8	69.7	4.5	
한우 송아지	기준값	3,452,100	451,923	302	241,334	8,265	447,371	37.9
	2023	3,162,000	472,888	528	245,686	14,023	467,339	
	변화율	-8.4	4.6	74.8	1.8	69.7	4.5	
-				인도(2010.1.1)	페루(2011.8.1)	베트남 (2015.12.20)	-	
낙두	기준값	11,918	9,712	0.249	2,106	-	2,767	58.7
	2023	10,625	14,019	4	9,294	10	9,951	
	변화율	-10.8	44.3	1,506.4	341.3	100	259.6	

2024-2025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안정세 전망

농식품부, 기상 이슈에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적정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세계 주요 곡물은 예상 생산량이 늘어나며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美 농무부에 따르면 2024-2025년 밀·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00만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00만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돼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8일 기준 국제 곡물 톤당 선물가격은 밀 226달러, 콩 446달러, 옥수수 175달러로 전년보다 0.7%, 12.5%, 26.9% 각각 하락했다.

● 선물가격 추세 ●

(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구분	평년	2023년	2024년				등락률(%)			
		5월 평균	2024.4월 (전월)	4.29주간 (전주)	5.7. (전일)	5.8.	전일 대비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밀	226	228	208	217	230	226	△1.4	4.3	8.8	△0.7
콩	466	509	428	430	453	446	△1.6	3.5	4.1	△12.5
옥수수	222	240	171	175	179	175	△1.8	0.2	2.6	△26.9

농식품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국제 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어 매일 국제 곡물 수급현황과 전망을 파악 중이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웨더마켓 기간인 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마약과의 전쟁 2년, 총 1,417kg 적발 … 2,600만명 동시 투입분

관세청, 밀수경로별 통관 검사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 동안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한 결과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는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를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당시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해 우범국發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해 밀수경로별 마약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도 확충했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과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장비보다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향후 타 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사례를 참고해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협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을 비롯해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하세은 기자 |

“서류 간소화·심사시간 단축” 달라진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 및 준비 방향 안내 간담회 열려

한국AEO진흥협회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5.0 개정과 관련해 5월 16일 간담회를 열었다.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 방향을 안내해 기업들의 원활한 AEO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세평가분류원과 서울세관·인천세관·한국AEO협회 관계자, 회원사 61개사 담당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AEO 고시)」 개정(안)은 올해 3월 13일 부로 시행됐으나 제4조 별표 1의 공인기준은 올해 7월 1일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심사가 갱신심사로, 자체평가가 정기자율평가로, 통관적법성 검증이 통관적법성 심사로 바뀌는 등 용어가 정비됐다. 또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안전심사2과의 곽동규 주무관은 “중소 수출입 기업의 서류 제출 축소, 심사기간 단축 등 공인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며, “미국의 최소보안기준(CTPAT MSC)나 해외 AEO 제도 변화를 국내 공인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중소 수출부문 기준 제출 서류에 변동이 생겼다.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가 늘어났는데, 이는 수출부문 내부통제시스템 공인 기준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곽동규 주무관은 “실질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닌 권장 부문으로 표기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AEO 공인 신청을 위해 중소 수출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평균 서류는 약 496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는 352개로 종전 대비 약 29%가 감소됐다. 대신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현장심사 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항목이 확대됐다.

● 중소 수출부문 기준 및 제출 서류 변동 ●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현재	62	155(17)	496
개정(안)	66	167(32)	352
증감	4개 증가(6.5%)	12개 증가(7.7%)	144개 감소(△29%)

* 체크리스트 개수 중 권장사항은 괄호 안에 별도 명시

유사한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는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서류 제출을 최소화했다. 자료 제출 및 심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AEO 공인 준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세계관세기구 이행 지침 국내 AEO에도 적용

美·中·EU 등 많은 국가가 AEO 인증제도를 도입한 점을 고려해 ‘최소보안기준’이라 일컬어지

는 미국의 CTPAT MSC 기준이 이번 5.0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업들의 관심사를 가장 모은 부분은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 강제근로, 죄수노예 노동 등을 포함해 신청업체의 제조 구매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신청업체가 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등이다. 이러한 부분을 윤리경영방침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AEO진흥협회 대외협력부 윤장근 과장은 금지된 노동 및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ESG 경영활동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대표이사 경영방침 등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했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 공인기준도 구체화됐다. 업무 전용 컴퓨터에 P2P, 웹하드 등의 프로그램 설치가 제한되는 점이 개정됐으며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치를 정보시스템에 설치, ▲보안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기준이 필수사항(단 중소기업은 권장사항)으로 신설됐다. 윤 과장에 따르면 방화벽 등의 소프트웨어, IPS와 IDPS 등의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하다. 정품소프트웨어의 경우 인증화면을 신청일 기준 가장 가까운 날짜로 캡처한 이미지를 준비하면 된다.

병해충 유입과 확산방지 조치도 추가됐다. 목재포장재의 병해충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 명시됐으며, 식물검역 봉인(SEAL)을 사용해 관리하되 손상된 봉인을 식별해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AEO 가이드라인 5.0 주요 변경사항 ●

항목	변경사항	대상	
통제환경	금지된 노동형태 이용해 물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수출입 부문	신설
	테러자금 등 조달용 자금세탁 방지 노력	수출입, 물류 부문	신설
	목재포장재 병해충 방지	공통	신설
거래업체 및 CCTV 감시	거래 업체 선정 및 심사 시 AEO 공인업체에 혜택 부여	공통	신설
	필수감시구역의 녹화자료보관	공통	완화
	녹화 자료의 주기적 샘플링 조사	공통	신설(중소수출은 권장)
정보보안	정보기술관리정책 관련 절차서 보유	공통	강화
	악성프로그램 침입 방지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치	공통	신설
	보안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공통	신설
	위조,정상적 허가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공통	신설
	병해충 오염 검사직원 추가 교육	공통	신설
교육 및 화물 대기구역	교육 참여 (총괄책임자) 독려	공통	강화
	화물대기구역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신설
재무건정성	부채비율 200% 이하	공통	완화
	영업이익 흑자, 영업현금흐름 흑자 조건 추가	공통	신설
	불가항력 단서조항 추가	공통	신설

한국AEO진흥협회 대외협력부의 안재진 연구위원은 “AEO 공인 취득을 돕기 위한 공통 교육을 검토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 심사에서 미리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기재부, 2년 만에 제18차 韓·中 경제장관회의 개최

韓·中 이사갈 수 없는 이웃, 양국 협력 관계 더욱 업그레이드 필요 공감

韓·中 경제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양국 간 경제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 하는 한편 정보 공유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됐던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2022년 8월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18차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珊潔)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韓·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는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촉진됐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지금이 韓·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해 나가는 한편,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韓·中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됐듯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자고 했다.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 이후 韓·中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진행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 및 정책 동향 공유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4(Asia 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APFRAS)’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 조화 도모를 위해 2023년 설립됐으며,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23년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라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5일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식약처에 설치하고 아·태지역 회원국 간 상호 협력·지원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해왔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작년에 참여한 회원국(7개국)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해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제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총 3곳이다.

‘아프라스 2024’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 등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하는 자리였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 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를 비롯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아프라스 2024’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 김성은 기자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하는 혁신수출기업·강소기업 모집

조달청이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축 원자재를 활용한 기업 지원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비축물자 할인방출(1~3%) 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통상자원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된 ‘2024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 역할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 기능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올해 8월 21일부터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했다”며,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해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 의회 통과 ··· “韓 기업도 영향 있어”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 여부 입증될 경우 EU 역내 유통 금지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노동 금지 규정'이 유럽 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규정은 이사회 공식 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규제 대상 품목은 EU 역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온라인 판매 포함)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에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되며,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보 등을 통해 역내 유통되는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이 인지되면, EU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정보제출부를 구축해 제보 접수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회원국은 1개 이상의 관할당국을 지정해 규제 이행을 전담하며, 만일 강제노동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국 관할당국이 조사를 주도하지만, EU 역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제품정보, 국별 강제노동 위험요소 등에 근거해 예비조사를 시행 후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객관적 입증 우려'가 있는 경우 심층 조사를 개시하며, 심층조사 진행이 결정되는 경우 조사를 담당했던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는 근무일 기준 3일 내로 대상 기업에 해당 내용을 통지 후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는 강제노동 규모와 심각성, EU 역내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의 수량 및 거래량, 최종 제품에서의 강제노동 우려 부품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총 9개월 이내로 진행된다. 조사 중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대상 기업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의 제출 시기는 1~2개월 사이로 설정될 예정이다.

필요하면 현장 조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대상이 EU 역외에 있는 경우 해당 기업과 역외국 정부의 동의하에 역외국 현장 조사 시행이 가능하다.

심층 조사를 통해 강제노동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역외수출금지 처분을 내리며, 이미 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제품 폐기는 대체가 가능한 경우 제품 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 밖에도 EU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으로 반도체 등 전략적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 처분을 명령하기보다 기업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 없음을 입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주도록 규정했다.

KOTRA는 “이번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직접 대상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노동 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진출 후 현지 생산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하세은 기자 |

해외 바이어 수출대금 미결제 위험, 2년 연속 증가

K-SURE, 글로벌 고금리·지정학적 위험 여파 올해도 이어질 것 … 리스크 관리 수단 갖춰야

해외 수입자 신용위험성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출기업들이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해외 바이어 신용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출대금 미결제 위험을 분석한 ‘2024년 해외시장 신용위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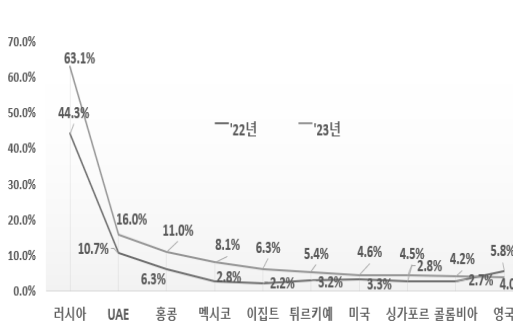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해외시장 신용위험지수는 전년 대비 1.1%p 상승한 5.9%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위험지수란 전체 해외 수입자 신용평가 건 중에서 신용불량등급(R)으로 평가된 기업의 비율로, 지수가 상승하면 수출거래 대금의 미결제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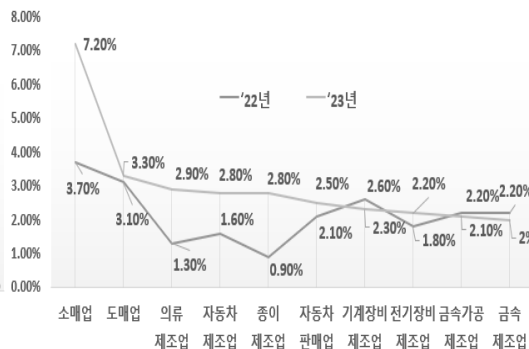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강화, 기업들의 영업중지와 파산증가 등을 해외시장 신용위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UAE, 홍콩 등 3개국의 신용위험이 가장 높았다. 해당국에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기업이 크게 늘면서 수출대금 미결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고금리 영향으로 미국 등에서 소규모 소매기업이 영업중지·파산하는 경우가 급증하며 도소매 유통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상위 10개국 신용위험 지수 변화 추이)



(상위 10 업종 신용위험지수 추이)

이외에도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용위험 증가, 베트남 도매업 신용위험 현황 등 주요 수출국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최신 이슈 또한 포함했다.

장영진 K-SURE 사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으로 올해도 해외 신용위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절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언급했다.

‘2024년 해외시장 신용위험 보고서’는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ksure.or.kr)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인천세관, 자동차 여행자 위해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

인천세관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일시수출입차량 통관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체결국 자동차를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를 말한다.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① 업무처리부서와 거리가 멀고, ②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됐으며, ③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인천세관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세관,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 계획' 및 '옛 청사 복원' 발표

부산세관이 5월 13일 부산세관 행정협의회를 열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부산세관 행정협의회는 1989년에 출범해 규제개선,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부산세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용요 부산세관장은 “스마트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과 관련해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고 부산항 근현대사와 함께한 옛 청사가 성공적으로 복원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세관, 여름 휴가철 맞이 불법 수입물품 특별 단속

평택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캠핑·레저용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7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구명복·물놀이용품·전기모기채·텐트·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이며, 이외에 계절별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품명 위장 밀수입,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상용물품 분산반입을 통한 관세포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중국에서 반입되는 장신구류에서 유해성분인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FTA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한·EFTA FTA 협정 관세 적용 가능 여부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FTA FTA
질문	스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 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EFTA FTA는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특혜대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의 재라벨링 작업은 위에 제시한 허용 가능한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접운송 원칙

(1) 개요

FTA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무상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 ④ 절차요건, ⑤ 운송요건(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물품이 '역내산'이어야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각 FTA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전체적으로 만족시켜야만 원산지 상품으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직접운송 원칙은 FTA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제3국을 거치지 않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운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2) 직접운송 제도의 목적과 운송요건의 예외

직접운송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협정 당사국 간의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직접운송 원칙은 모든 FTA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FTA 적용상 중요한 원산지의 개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꼭 충족해야 하는 규정인 것이다.

제도의 목적상 필요해 보이는 직접운송 원칙은 그 예외가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칙대로만 엄격하게 운송요건을 적용한다면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물품들은 모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류실무상 환적이나 경유는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화물들에 대한 FTA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FTA의 활용도가 급감할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① 경유/환적국 내에서의 작업범위 안에서, ② 세관의 통제하에 경유/환적이 이뤄지고, ③ 기타 다른 추가 충족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봐 FTA를 적용하고 있다.

직접운송 원칙은 해당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주형, 유럽형으로 나뉘어 설명한다.

미주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규정해놓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에 반해 유럽형은 협정상에 ‘직접운송 될 것’을 명시해 놓은 협정을 말한다. 그 대신 일정 조건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예외를 뒤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해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겠다”는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3) 한·EFTA FTA 직접운송 원칙 관련 규정

한·EFTA FTA는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1부(원산지 규정) 제14조(직접 운송)에서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유럽형 FTA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1부(원산지 규정)
제14조(직접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해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 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한·EFTA FTA 또한 특혜대우(FTA 특혜관세 적용)가 양 당사자(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접운송이 이뤄짐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에도 직접운송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7조(원산지 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직접운송 등을 포함한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EFTA FTA에 대한 내용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을 안내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 적용 시에는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각 협정의 해석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요구하며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EFTA FTA에 대한 직접운송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EFTA	○	-	-	탁송품 분리, 파이프라인 운송	요청 시 수입국 법령에 따름		

일반적인 FTA에서는 직접운송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 보존 등의 제한적인 공정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협정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한·EFTA FTA에서는 탁송품의 분리나 파이프라인 운송 등이 허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FTA에서는 전체 운송경로에 대한 입증이나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를 예시(규정)하는 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EFTA FTA는 관련된 규정 없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즉, 실제 원산지 검증 대응 시에는 수입국 법령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의 입증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에서는 스위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비당사국인 네덜란드의 보세구역 한글 라벨링 작업 후 수입이 진행되는 경우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라벨링은 정부에 의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타 국내적 규제를 목적으로 사용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수단(technical measures)의 범주에 속한다.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벨링의 기본 기능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인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¹⁾

1) <라벨링(Labelling)의 비관세장벽 측면 연구(2003)>,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가장 대표적인 라벨링으로는 식품에 대한 라벨표시가 있을 것인데, 식품에 대한 라벨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영양 정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라벨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식품 등의 경우 해당 수입국의 라벨링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사례는 스위스에서 물품이 수입돼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당사국에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맞는 라벨링 작업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사례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EFTA FTA에서 정하는 직접운송 규정을 토대로 비당사국에서의 라벨링 작업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한·EFTA FTA상 라벨링 가능 여부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은 협정별로 유사하지만 어떠한 작업까지 비당사국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세부적인 규정은 개별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EFTA FTA에서 비당사국에서의 라벨링 작업 허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협정의 직접운송상 비당사국에서의 작업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한·EFTA FTA는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협정들과는 달리 탁송품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라벨링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라벨링의 경우 물품의 상태를 위한 것이 아닌 수입국 내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EFTA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당사국의 라벨링에 관한 작업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한·EFTA FTA를 적용함에 있어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라벨링이 필요한 경우 스위스 또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수작업(제158조)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수작업의 한계(제22조)로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 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을 보수작업의 허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다른 협정에서의 라벨링 작업 가능 여부 확인

한·EFTA FTA에서는 비당사국에서의 라벨링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협정에서 비당사국에서의 라벨링 작업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규정을 통해 라벨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의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를 규정하며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relabelling),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재라벨링’이란 수입 당사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라벨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RCEP에서도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의 라벨링 작업이 허용된다.

RCEP에서 직접운송 원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을 경유할 때의 허용범위를 하역, 재선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서’에서는 작업의 허용범위를 하역, 재선적 이외에도 탁송물의 분리,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직접 운송	연결 원산지증명
작업 인정 범위	(인정범위)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인정 범위)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즉, 베트남産 물품이 싱가포르를 통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이 이뤄지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의 허용되는 작업 범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수입국 내에서의 라벨링 규정 준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입국 내 법령을 확인해 정확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출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련 수입국에 규정된 라벨링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수출국이 아닌 타국(제3국, 수입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상품 여부뿐 아니라 직접운송 등 관련 제규정(諸規定)을 충족해야 하며, 다수의 협정에서 비당사국에서의 라벨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국의 법령에 따른 라벨링 절차를 어디에서 수행할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비당사국에서의 라벨링 작업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을 협정문에 근거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고객지원센터

징수 /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 변경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를 월별납부(43)에서 사후납부(14)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월별납부를 개별 사후납부로 징수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징수형태 변경 시 충족요건(월별납부 → 사후납부)

-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 것(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 ③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것
- * 징수형태 부호 12(개별담보), 13(포괄담보)

수입요건 / 입욕제의 수입요건

제3307.30-1000호에 분류되는 입욕제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3307.30-1000호에 분류되는 입욕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화장품법」,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 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産 특정 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産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産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産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시(동물의 학명, 적출 부위, 롯트 번호 및 원산지 기재) 제출·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産 특정 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産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産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 정부가 발행한 TSE 미 감염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産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시(동물의 학명, 적출 부위, 로트 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받아야 함.

원산지 / 사은품의 원산지표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작은 파우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판매용이 아닌 제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제1항 제6호에 따라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목적은 원산지를 인식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판매촉진·광고용 등으로 따로 진열되거나 무료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 한·중 FTA 비당사국 송장 관련

기존 거래업체와 제3국 거래를 진행하다 이번에는 직납거래로 제3국 개입 없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거래업체에서 한·중 FTA C/O의 Remark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을 표기해 발행한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제5란(비고)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기재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작성돼야 하지만, 제3국 송장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5란에 관련 내용 기재 시 그 사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기재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안내받기 바랍니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이영민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1. 들어가며

품목분류란 과세의 4대 요건 중 하나인 세율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관세율 및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품목분류는 법률인 「관세법」 제49조·제50조, 관세율표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인 HS 협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HS 협약에 의하면 협약체약국의 관세율표를 6단위 소호까지 국제 HS 체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HS 협약 당사자로서 소호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되고 있는 점 및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국내법으로 품목분류 기준으로 채택된 HS 해설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통일적 분류를 하기로 한 6단위 소호의 분류는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의 해석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반응성 가스의 유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가스유량자동조절기가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해 HSK 제9032.81-2091호(기본세율 3%)에 분류해야 하는지, ‘기타의 자동조절기’ HSK 제9032.89-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수원고등법원 2023.11.10. 선고 2022누14878 판결¹⁾).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관련 부품과 계측기기의 수출입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가스유량자동조절기를 수입해 이를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2.00.경부터 2020.1.00.경까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반응성 가스의 유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유량자동조절기(모델명 : ‘A’, ‘B’,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번호를 제9032.89-9090호(기본세율 8%)로 신고했다.

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다. 원고는 2019.8.00.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기식 밸브로 구성된 가스유량자동조절기가 1999년경 개정된 舊 「관세법」에 따른 기본세율 3%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해 질의하면서 설명자료에 모델명 'C' 제품의 사진을 첨부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10.00. 위 질의에 대해 “반도체 제조용인 전기식 밸브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질의물품)는 1999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 제9032호 ‘유량자동조절기 및 조절기’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되므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라. 원고는 위 회신 내용을 근거로 2019.11.00. 피고에게 위 질의물품의 품목번호는 제 9032.81-2091호로 정정돼야 하고 3%의 기본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위 'C' 제품(이하 '이 사건 질의물품'이라 한다)의 수입 과정에서 신고·납부했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8억 9,019만 9,4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2019.12.00.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환급했다.

마. 원고는 2020.1.0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유량의 측정방식 외 기능과 용도가 이 사건 질의물품과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도 3%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신고·납부했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합계 12억 2,343만 8,7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20.3.00.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9032.81호에 해당하므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9032.81호 '액압식이나 공기식'은 기기의 제어방식이 아니라 제어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어대상이 액체나 기체의 양일 때에는 위 제9032.81호 '액압식이나 공기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은 가스의 양을 제어하므로 위 제9032.81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가스박스의 각 라인에 설치돼 가스의 유량을 제어할 목적으로 제작됐고, 공압식(pneumatic)인 가스분배시스템에 유기적으로 결합돼 그 일부를 구성하므로 공기식(공압식) 자동제어용 기기로 분류돼야 한다.

나. 관세율표나 품목분류표, HS 해설서에 이 사건 물품 내부에 장착된 밸브의 작동방식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피고는 밸브의 작동방식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해서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

다. 관세율표가 1999.12.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 추가돼 그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율이 인하된 취지는 “ITA 체결,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와 ITA 협정국 사이 반도체 등이 무세화됨에 따라 반도체 원부자재의 세율을 3%로 인하하되, 국산 자본재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무세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의 품목분류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이 사건 물품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 대부분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는 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위 「관세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도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전기식 밸브로 구성된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인하된 세율 3%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이와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했다.

라. 1999년 관세율표 개정 시 제9032.81호에 반도체 제조용 기기인 유량 자동조절기와 조절기 중 ‘액압식이나 공기식’인 것만 해당하는 것처럼 규정된 것은 단순한 입법 미비 및 오류에 불과하다.

마. HS 해설서에는 ‘공기식’을 전송방식이 아닌 전송대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 품목번호 제9032.81호의 ‘액압식이나 공기식’을 제어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지 않는다.

4. 판결 내용의 요지

가. 이 사건 물품의 기능과 구성

이 사건 물품은 질량유량제어기(MFC, Mass Flow Controller)의 일종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식각공정과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반응성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유량 센서(Flow Rate Sensor)

이 사건 물품을 통해 해당 반도체 제조공정에 공급되는 가스의 양을 온도(thermal-type)나 압력(pressure-type)의 변화를 통해 측정한다.

2) 중앙처리장치(CPU)부

유량 센서로부터 전달받은 측정값을 미리 설정된 값과 비교해 유량 조절에 필요한 명령을 전기신호로 밸브 및 작동기에 보낸다. 이 장치는 중앙처리장치와 유량 센서가 감지한 온도나 압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회로, 위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회로, 외부에서 입력된 신호

(setting signal)를 변환해 중앙처리장치에 전달하는 회로,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유량 조절을 위한 전기신호를 받아 이를 밸브 및 작동기에 전달하는 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3) 밸브(Flow Rate Control Valve) 및 작동기(Actuator)

중앙처리장치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작동기가 밸브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가스의 유량을 미리 설정된 값에 맞춰 조절한다. 작동기는 그 작동방식에 따라 액압식(또는 유압식, hydraulic), 공기식(또는 공압식, pneumatic), 전기식(electric)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은 전기식 중 피에조 전기식(piezo-electric) 작동기를 사용한다.

나.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기준

1) 우리나라가 1968.12.2. 가입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수출입상품을 부(Section), 류(Chapters), 호(Heading), 소호(Subheading)의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의 숫자로, 호는 4단위의 숫자로, 소호는 6단위의 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위 협약에서 정해 놓은 분류 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이하 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舊 「관세법」’이라고 한다)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제50조에서 [별표] 관세율표(이하 ‘舊 관세율표’라고 한다)를 정하고, 제84조 및 제85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협약에 따라 권고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에 대한 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이하 ‘HS 해설서’라고 한다)를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 정해 고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했다.

2) 舊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해야 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舊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註) 제7호에 따르면, 제9032호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는 ①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②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에만 적용한다.

舊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에서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제9032호)’를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제9032.10호, Thermostats), 매노우스타트(제9032.20호, Manostats), 그 밖의 기기(제9032.8호, Other), 부분품과 부속품(제9032.90호, Parts and accessories)으로 분류한 뒤, 그중 ‘그 밖의 기기’(제9032.8호)를 다시 액압식이나 공기식(제9032.81호, Hydraulic and pneumatic), 기타(제9032.89호, Other)로 분류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의 변경 및 고시

舊 관세율표의 내용 및 그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99.12.28. 개정 전의 것	舊 관세율표 (2020.12.22. 개정 전의 것)	2022.12.22. 개정 후의 것
9032	9032	9032
1. 온도 자동조정용기기	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2. 매노우스타트	20 매노우스타트	20 매노우스타트
3. 기타의 기기	8 그밖의 기기	8 그밖의 기기
가.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81 액압식이나 공기식	81 액압식이나 공기식
(1) 액면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1. 액면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2)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2.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가) 항공기용의 것	가. 항공기용	
(나) 기타	나.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2) 기타	
(3) 기타	3. 기타	

1999.12.28. 개정 전의 것	舊 관세율표 (2020.12.22. 개정 전의 것)	2022.12.22. 개정 후의 것
나. 기타	89 기타	89 기타
(1) 습도자동조정기	1. 습도 자동조정기	1. 습도 자동조정기
(2) 전압자동조정기	2. 전압 자동조정기	2. 전압 자동조정기
(3) 기타의 전기적량의 자동조정 기기	3.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정 기기	3.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정 기기
(4) 기타	4. 기타	4.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가. 항공기용	가. 항공기용
	나. 기타	나.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2) 기타
		5. 기타

舊 관세율표가 적용된 이후 관세청장은 2001.12.26. 가스유량자동조절기(MFC)를 제9032.81호 ‘액압식이나 공기식’으로 분류했다가, 2002.3.18. “유량센서에 의해 질량유량에 비례한 온도 변화를 포착해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유량신호는 비교제어회로에서 설정, 출력신호의 차로 밸브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기기로 액압식 또는 공기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9032.89호 ‘기타’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이를 고시했다. 이후 관세청은 전기식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해 제9032.89호로 품목분류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라. 이 사건 물품이 舊 관세율표 중 제9032.8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물품은 온도나 압력이 아닌 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므로, 품목분류 제9032호 중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제9032.10호)나 매노우스타트(제9032.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밖의 기기(제9032.8호) 중 액압식이나 공기식(제9032.8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舊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에서는 ‘액압식이나 공기식(Hydraulic or pneumatic)’의 의미에 관해 정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물품이 자동조정하는 대상이 ‘액체 또는 공기’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목분류 적용기준인 HS 해설서에 의하면 자동조정의 대상으로서 액체나 공기를 표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liquids or gases’라고 표현하고 있다.

● HS 해설서 중 제9032호 - (I) 부분 ●

<국문>

(I) 액체나 기체의 유량·수위·압력·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 <생략> ...

이 류의 주 제7호 가목의 의미에 속하는 **액체·기체·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기는 단일체(single entity)나 이류의 주 제3호에 따라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형성하는 세 개의 장치로 구성된다.

<영문>

(I)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flow, level, pressure or other variables of liquids or gases, or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emperature

Automatic control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emperature form part of complete automatic control systems and consist essentially of the following devices :

뿐만 아니라 HS 해설서는 ‘액압식이나 공기식(hydraulic or pneumatic)’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 HS 해설서 중 제9032호 - (I) 부분 ●

<국문>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자동제어용 기기는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생략]로서 변량(變量 : variable) ... <중략> ... 을 지정치로 회복하게 하는 기기와 연결 ... <중략> ... 되어 있다.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식·**유압식·압축공기식**이나 전기적 조절에 의해 원격 조절되는데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생략). 자동조절기기가 명령을 수행하는 기기와 결합이 된 경우에는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해 결정한다 ... <생략>

<영문>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flow, level, pressure and other variables of liquids or gases or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emperature are connected to an appliance which carries out the orders ... <중략> ... which restores the variable ... <중략> ... to the prescribed value ... <중략> ... This appliance, generally remote controlled by a mechanical, **hydraulic, pneumatic** or electric control, is to be classified in its own appropriate heading ... <중략> ... If the automatic control apparatus is combined with the appliance which carries out the orders, the classification of the whole is to be determined under either Interpretative Rule 1 or Interpretative Rule 3 (b) ... <생략>

● HS 해설서 중 제9032호 - (II) 부분 ●

<국문>

자동조절기는 전기식·**압축공기식 또는 액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는 조절변량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

... <생략> ...

작동기(actuator)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생략]. 자동조절기는 작동기와 결합한 경우에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결정한다 … <생략>

<영문>

Automatic regulators are connected to an electrical, **pneumatic or hydraulic** actuator, which brings the controlled variable back to the desired value.

… <생략> …

The Actuators are to be classified in their own appropriate headings … <생략> … If the automatic regulators is combined with the actuator, the classification of the whole is to be determined under either Interpretative Rule 1 or Interpretative Rule 3 (b) … <생략>

즉 HS 해설서에 의하면, ‘액압식이나 공기식(hydraulic or pneumatic)’은 자동제어용기기(instruments and apparatus)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appliance)를 원격 조절하는 방식 또는 자동조절기(regulators)와 연결된 작동기(actuator)가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해설서에서 액압식이나 공기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자동조절기와 밸브/작동기가 결합되지 않는 경우의 원격 조절하는 방식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위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표현이 그 밸브나 작동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자동조절기와 밸브/작동기가 결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액압식이나 공기식’은 그 밸브나 작동기의 조절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제9032.81호의 ‘액압식이나 공기식(hydraulic or pneumatic)’은 밸브나 작동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앞서 ‘기능과 구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를 흐르게 할 때 피에조 물질(압전체)에 나타나는 변형을 이용해 밸브를 개폐하는 전기식 작동기(electrical actuator)를 사용하므로, 제9032.8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이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HS 해설서 중 제9032호의 (I) 부분에 해당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기기(밸브)와 결합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HS 해설서 중 제9032호의 (II) 부분에 해당하고 작동기와 결합한 경우에 해당해 위 HS 해설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칙 제1호나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제3호 나목이 정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자동제어적 기능에 있으므로 밸브 등에 관한 제8481호가 아니라 제9032호로 분류해야 하는데, 제9032호 내의 소호 분류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제9032.81호 ‘액압식이나 공기식’은 제어의 대상이 아니라 제어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舊 관세율표에서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는 품목번호 제9032.81호 ‘액압식이나 공기식’ 아래에만 규정돼 있고 제9032.89호 ‘기타’ 아래에는 규정돼 있지 않는데, 품목번호 제9032.81호의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기기의 제어방식만 의미한다면,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방식을 분류하기 위해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를 제9032.81호 ‘액압식이나 공기식’뿐만 아니라 제9032.89호 ‘기타’ 부분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9032.89호 ‘기타’ 부분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제9032호)’ 중에서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제9032.10호), 매노우스타트(제9032.20호)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기기(제9032.8호)’에서 다시 액압식이나 공기식(제9032.81호)을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기타(제9032.89호)의 세부 항목으로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모든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액압식이나 공기식(제9032.81호)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이 가스박스 내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박스와는 별개 물품으로 봐야 하므로, 가스박스의 제어방식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는 없다.

마. 「관세법」 개정의 입법 취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에 대해

「관세법」이 1999.12.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검토보고서에서는 관세율 인하 대상 원부자재로 ‘증착기 등의 부분품으로서 압력조절기 및 가스박스’를 언급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유량 자동조정기기는 그 작동방식에 따라 유압식·공압식·전기식 등 여러 종류가 있는 점, 원고는 유압식이나 공압식의 경우 미세한 조절이 어려워 반도체 제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서증 자료 각 기재에 의하면 공기압력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용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공기압력으로 제어밸브를 작동시켜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약액 분사량을 자동조절하는 기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999년도 개정 결과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액압식이나 공기식(제9032.81호)의 하위항목으로만 규정된 점,

「관세법」이 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면서 제9032.81호의 하위항목들이 삭제되고 제9032.89호의 하위항목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추가됐는데, 그 개정 이유를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액압식이나 공기식은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전기식

자동조절기는 개정 전 관세율표에 따르면 액압식이나 공기식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세율이 8%로 분류돼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가스박스’에 이 사건 물품이 포함된다거나 위 1999.12.28.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가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이기만 하면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니어도 모두 관세율을 인하하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청서와 설명자료에는 이 사건 질의 물품의 사진(모델명이 ‘C’인 것)과 그 구성요소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1999년경 「관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내용, 외국에서 적용하는 세율과의 비교, ‘pneumatic’이라는 단어의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물품의 구성요소와 작동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신에도 이 사건 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등 자세한 판단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회신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바. 1999년 관세율표 개정의 입법 미비 및 오류에 해당 여부

舊 「관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ITA 체결,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와 ITA 협정국 사이 반도체 등이 무세화됨에 따라 반도체 원·부자재의 세율을 3%로 인하하되 국산 자본재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무세화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개정 결과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액압식이나 공기식(제9032.81호)의 하위항목으로만 규정되고 이 사건 물품이 적용되는 전기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품목번호 제9032.81호의 하위항목들이 삭제되고 제9032.89호의 하위항목으로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추가됐는데, 그 개정 이유를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舊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9032.81호에 반도체 제조용 기기인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중 ‘액압식이나 공기식’인 것만 관세율 3%가 적용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입법 미비 및 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舊 관세율표 제9032.8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9032.89호로 분류해야 하고, 그중에서 습도, 전압, 그 밖의 전기적 양을 조정하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제9032.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시사점

대상 판결은 HS 해설서 문언에 따라 ‘액압식이나 공기식’은 자동제어용 기기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를 원격 조절하는 방식 또는 자동조절기와 연결된 작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舊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9032.81호의 ‘액압식이나 공기식’은 밸브나 작동기를 조절하는 방식, 즉 제어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999년 「관세법」 개정 결과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하위항목으로만 규정되고 전기식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2020년 「관세법」 개정 이유가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한 동일 관세율 3%를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1999년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가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이지만 하면 모두 관세율을 인하하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에도 이 사건 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등 자세한 판단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舊 관세율표 제 9032.89호에 분류해야 된다고 봤다.

이처럼 대상 판결은 품목분류는 무엇보다도 HS 해설서의 문언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결로서 앞으로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9031호 해설 및 쟁점 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해설 요지]

제9031호는 크게 (I)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II) 윤곽 투영기 등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은 다시 빛의 사용 유무에 따라 (A) 비광학식(Non optical)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B) 광학식(optical)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분류 기준을 (1) 범용성·다용도의 측정·검사기기, (2) 기하학적 요소의 측정·검사기기, (3) 윤곽·상태의 측정·검사기기, (4) 특정 산업용의 측정·검사기기, (5) 그 밖의 측정·검사 기기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II)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그룹의 기기는 나사, 게이지, 기계부품 등의 피검사물을 광학적으로 정확한 배율로 확대하고 투영해 스크린에서 그 형상이나 치수, 각도 등을 측정한다. 대부분 광원, 집광렌즈, 재물대(載物臺), 반사경, 투영렌즈, 스크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9031 소호는 거래량이 많은 ① 균형시험기, ② 테스트벤치, ③ 반도체 웨이퍼·소자 및 포토마스크와 레티클 검사용기기를 특정 소호로 규정하고 그 밖의 기기와 부분품과 부속품을 소호로 세분화해 총 6개로 구성돼 있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윤곽투영기, 전자식 균형시험기, 전자식 테스트벤치, 옥탄가 측정기, 자동차산업 시험용기기, 디지털 면적계, 표면완성 가공 시험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반도체 레티클 검사기, 렌즈 도수측정기, 재료의 균열검사기, 방직용 섬유재료 측정검사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관세율표내의 투영기(projectors)의 분류를 살펴보면, 제8528호의 ‘프로젝터(projector)’는 모니터 등의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표면에 투영하는 기기이며, 제9007호의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는 필름상의 활동하는 영상을 스크린 위에 확대 투영하는 기기다. 제9008호의 ‘투영기(Image projectors)’는 슬라이드 투영기와 같이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기기이며, 제9011호의 ‘마이크로 영사용(micro projection) 광학 현미경’의 마이크로 영사기는 현미경과 결합돼 현미경에 의해 확대되는 상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투영하는 데 사용한다. 제9031호의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는 다양한 기계부품 등의 피검사물을 광학적으로 정확한 배율로 확대하고 투영해 스크린에서 그 형상이나 치수, 각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적산화전계나 생산량계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029호로 분류한다. 만일 제9029호의 기기가 결합된 그 밖의 측정 검사용 기기는 제90류 주 제3호 등을 적용해 제9031호로 분류 가능하며, 제90류 주 제5호에 따라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도 제9031호로 분류함에 유의해야 한다.

제9031호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검사기기의 커버와 케이스, 면적계용 암(planimeter arm), 다이얼컴퍼레이터(dial comparator)용 스탠드와 측정 테이블 등이 있다. 제17부(수송기기)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부분품 또는 엔진의 불균형과 검정용에 사용하는 균형시험용 기기와 테스트벤치, 옥탄가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 차량용 모터시험기, 차량 진동시험기, 기어 시험기 등은 제9031호로 분류한다.

제9031호에는 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므로, (a)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 기기, (b) 현미경(제9011호나 제9012호), (c) 제9015호의 측량용 기기 등, (d) 수지식(for use in the hand)의 길이 측정용 기기(제9017호), (e) 제9018호의 내과용·외과용 등의 기기 등, (f) 재료의 기계적 성질 시험용 기기(제9024호), (g) 제9026호의 유량계(flowmeter) 등, (h) 제9030호의 전기적 양(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전리선의 측정용이나 검출용 기기, (i) 자동조절용 기기나 자동제어용 기기(제9032호)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9031호는 크게 (I)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II) 윤곽 투영기 등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그룹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므로 (a)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 기기, (b) 현미경(제9011호나 제9012호), (c) 제9015호의 측량용 기기 등, (d) 수지식(for use in the hand)의 길이 측정용 기기(제9017호), (e) 제9018호의 내과용·외과용 등의 기기 등, (f) 재료의 기계적 성질 시험용 기기(제9024호), (g) 제9026호의 유량계(flowmeter) 등, (h) 제9030호의 전기적 양(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전리선의 측정용이나 검출용 기기, (i) 자동조절용 기기나 자동제어용 기기(제9032호) 등 제9005호부터 제9012호까지나 제9015호부터 제9030호, 제9032호의 기기는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그룹에는 광학식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I)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은

다시 빛의 사용 유무에 따라 (A) 비 광학식(Non optical)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B) 광학식(optical)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분류 기준을 (1) 범용성·다용도의 측정·검사기기, (2) 기하학적 요소의 측정·검사기기, (3) 윤곽·상태의 측정·검사기기, (4) 특정 산업용의 측정·검사기기, (5) 그 밖의 측정·검사 기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A) 비광학식(Non optical)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위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용성·다용도의 측정·검사 기기들이란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측정, 검사를 수행해 제90류의 어느 특정한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기기들이다. 특히 제9024호(재료의 기계적 성질 시험용 기기)와 제9030호(전기적 양의 측정·검사기기와 전리선의 측정·검사용기기)는 제외하며 다음의 기기들을 포함한다.

- ① 다양한 기계부품을 기계적으로 회전시키거나 경사의 원리를 이용해 불균형을 측정하는 균형시험용 기계(machine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동적·정적·전자식 균형 장치가 부착된 것)
- ② 특정기계나 모델이 설계한대로 작동하는지 등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벤치(test bench). 이 측정 검사기기는 엔진과 모터·발전기·펌프·속도계·회전계 등에 사용하며 프레임(frame)과 측정·검정용 기기로 구성
- ③ 금속의 봉(bar)·관(tube)·프로파일(profile)·스크루(screw)·침(needle) 등의 기계가공품이나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장치

(2) 기하학적 요소의 측정·검사기기는 주로 점·선·면·각도·부피(면적)·원주율·도형 등과 같은 기하학 요소를 측정·검사함으로써 공간에 있는 대상들의 치수, 모양, 상대적 위치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다. 특히 여기에는 제9015호(토지측량기기·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거리측정기)의 측량용기기와 제9017호[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 제도기·축소 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치식 길이 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는 제외하며 다음의 기기들을 포함한다.

- ① 설계도·도표·가죽 등의 면적을 측정하는 면적계(planimeter)
- ②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장치·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 센서 등을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양의 측정용 기기
- ③ 정밀자의 검사용·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에 사용하는 표준봉계이지(column-type gauge)
- ④ 각도의 검사에 사용하는 사인 바(sine bars)와 조정대가 있는 사인바(adjustable table sine bar)
- ⑤ 다양한 거리에서 수평선 또는 수평면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포수준기(bubble level)
- ⑥ 수평면과 비교해 수평을 검사하거나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경사계(clinometer)
- ⑦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능하는데 사용하는 다림줄(plumb-line)
- ⑧ 렌즈·미러·스펙터클렌즈(spectacle lens) 등의 구면의 굴곡을 측정하는 구면계(spherometer)
- ⑨ 여러 가지 기계부품을 수동이나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다차원 측정기구
- ⑩ 점토 등의 수축률 측정용 기기
- ⑪ 광전 공정(photoelectric process)을 이용해 가죽 등의 표면 상태를 측정하는 불규칙면 측정 장치

- ⑫ 실의 직경을 측정하는 장치
- ⑬ 압연 중의 금속의 시트(sheet)나 스트립(strip)의 두께를 연속적으로 측정 검사하는 장치
- ⑭ 재료의 두께를 비파괴로 검사하는 초음파 두께 측정 계기
- ⑮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
- ⑯ 측미(micrometric) 표준측정기
- ⑰ 렌즈의 심출기(opticians' centring machine)

(3) 윤곽·상태의 측정·검사기기에는 다음의 기기를 포함한다.

- ① 모자 제조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이를 천공해 조작하는 머리 윤곽 측정기(head contour measurer)
- ② 표면 상태 계측용의 전기식, 기계식, 압축공기식의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4) 특정 산업용의 측정·검사기기는 제90류의 어느 특정한 호로 분류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측정·검사 기기로 특히 제9005호(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 제9015호(토지측량기기·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 물리학용 기기), 제9018호(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제9032호(자동조절용이나 자동 제어용 기기)는 제외하며 다음의 기기를 포함한다.

- ① 석유의 옥탄가나 디젤 엔진오일의 세탄가 측정 등 연료시험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화학 기기
- ② 점화장치(코일·점화플러그·콘덴서·축전지 등)의 검사, 기화기(carburettor) 성능의 최고성(the best carburettor setting) 검사, 실린더에서의 압력 측정과 같은 차량용 모터의 시험용과 조절용 기기
- ③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하는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④ 방직용 섬유재료의 검사용 기기
- ⑤ 레버(lever)의 확대원리를 이용해 기어의 윤곽·피치원직경·톱니스페이싱(tooth spacing)·롤링 접촉(rolling contact), 리드(lead) 등의 시험에 사용하는 기어(gear)시험기
- ⑥ 헤어스프링(hairspring), 진폭계(amplitude meter), 오실로미터(oscillometer), 시계 최종 검사기와 같은 시계나 시계부품의 검사용 기기

(5) 그 밖의 측정·검사기기 또한 제90류의 어느 특정한 호로 분류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측정·검사 기기로 특히 제9024호(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와 제9030호[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는 제외하며 다음의 기기를 포함한다.

- ① 수압기·압연기·재료시험기의 압축 응력(compression force)이나 인장 응력(tractive force)의 측정용과 하중시험(항공기)용 동력계를 포함한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
- ②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 주는 로드셀(load cell)
- ③ 전기접촉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전자크로노그래프(electronic chronograph)와 전자크로노스코프(electronic chronoscope)

(B)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 소그룹은 (A) 비광학식(Non optical)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소그룹에서 살펴본 것처럼 (1) 범용성·다용도, (2) 기하학적 요소, (3) 윤곽·상태, (4) 특정 산업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음의 것을 포함하며 광학기기와 결합돼 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소그룹의 기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31호로 분류한다.

(1) 범용성·다용도의 측정·검사기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① 신장(elongation)·길이·표면 등의 검사에 사용하며 테이블·프레임(frame)·슬라이드 왕복대·두 개의 측정현미경으로 구성된 콤파레이터 벤치(comparator bench)
- ② 대형 부분품·드레드 게이지(thread gauge)·기어 커터(gear cutter)·선반용 나사가 있는 샤프트(shaft)·크로스 멤버(cross member) 등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프레임(frame)과 테이블·관측용 현미경·두 개의 측미(micrometric) 현미경과 투영장치로 구성돼 있는 메저링 벤치(measuring bench)

(2) 기하학적 요소의 측정·검사기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①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 ② 평면의 검사에 사용하며 표준광선정반(standard optical flat)과 간섭밴드(interference band)의 측정을 위한 측미(micrometric) 십자선을 넣은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광파간섭계(interferometer)
- ③ 면(plane)의 차(deviation)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며 프리즘과 양쪽 끝에 렌즈를 붙인 중공척(hollow rule)과 측정자를 내장시킨 접안마이크로미터로 돼 있는 광학식 자(optical rule)
- ④ 공작기계의 테이블의 동작을 검사하며 mm의 단위로 판독하는 측미기구가 갖추어져 있는 측미(micrometric) 판독기
- ⑤ 완성가공 중의 치차의 치(齒)나 공구 날의 각도 검사용의 광학식 측각기(optical goniometer)나 각도 게이지(angle gauge)

(3) 윤곽·상태의 측정·검사기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①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해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 ② 윤곽(profile)과 표면의 상태(conditions of surface)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신속충격차동측정자(rapid impulse differential feeler)와 광학적관측기(optical viewer)를 갖춘 장치

(4) 특정 산업용의 측정·검사기기에는 다음의 기기를 포함한다.

- ① 작업대와 기계 슬라이드(machine slide)의 곧음성(straightness)의 검사용과 금속구조물의 측정에 사용하며 주로 망원경과 조준기나 미러(mirror)로 구성돼 있는 얼라인먼트 텔레스코프(alignment telescope)
- ② 안경용 렌즈의 도수측정용 포시미터(focim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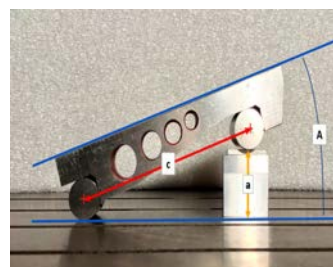
(Ⅱ)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그룹의 기기는 나사, 게이지, 기계부품 등의 피검사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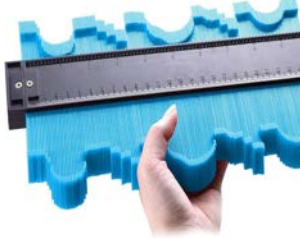
광학적으로 정확한 배율로 확대하고 투영해 스크린에서 그 형상이나 치수, 각도 등을 측정하며 대부분 광원, 집광렌즈, 재물대, 반사경, 투영렌즈, 스크린 등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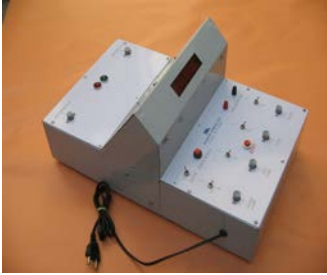
조명 광선의 방향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나뉘며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수직형은 재물대의 면이 수평이 되므로 평면 피검사물을 그대로 얹을 수 있고 재물대가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형 부품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수평형은 피검물과 릴레이렌즈와의 거리를 크게 한 것으로 대형 부품 등의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윤곽투영기, 전자식 균형시험기, 전자식 테스트벤치, 옥탄가 측정기, 자동차 모터 시험용기기, 디지털 면적계, 표면완성가공 시험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반도체 레티클 검사기, 렌즈도수 측정기, 재료의 균열검사기, 방직용 섬유재료 측정검사기 등이 있다.

● 제9031호의 다양한 기기 ●

전자식 균형시험기	전자식 테스트벤치	옥탄가, 세탄가 측정기
		
자동차 모터 시험용기기	휴대용 디지털 면적계	조화분석기(면적계)
		
다이얼 지침식 비교측정기	내연기관 성능 검사기	각도 검사용 사인바
		

디지털 높이 검사기(표준봉) 	조정식 수포레벨기 	경사계 
다차원 측정기 	렌즈 심출기 	디지털 측미 표준 측정기 
기계의 진동측정 검사기 	방직용 섬유재료 검사용 기기 	표면완성가공 시험기 
기어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 어군탐지기 
크랙, 균열 측정 검사기 	수동식 윤곽 측정기 	로드셀 

전자크로노스코프	구면계(굴곡 측정)	반도체 레티클 검사기
		
얼라인먼트 텔레스코프	평면검사용 광파간섭계	도수측정 포시미터
		
메저링 벤치	수평형 윤곽투영기	수직형 윤곽투영기
		

□ 제9031 소호의 구성

제9031 소호는 거래량이 많은 ① 균형시험기, ② 테스트벤치, ③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및 포토마스크와 레티클 검사용기기를 특정 소호로 규정하고 그 밖의 기기와 부분품 및 부속품을 소호로 세분화했다(총 6개 소호).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9031.10 - 균형시험기(광학식의 것을 포함한다)
- 제9031.20 - 테스트벤치(test bench)(광학식의 것을 포함한다)
- 제9031.4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 제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 이 소호에는 또한 집적회로 검사용 광학식 기기와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광학식 기기를 포함한다.
- 제9031.49 - 기타
*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
- 제9031.80 - 그 밖의 기기(광학식의 것을 제외한다)
- 제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31호 HSK 및 바(-)의 구성

반도체 산업, FTA, WCO 센서 분류 결정, 해설서 일부 예시 물품을 반영하기 위해 세세분화했으나 큰 의미는 없다.

II. 관련 규정

제9031호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8423호의 용어

-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 제8449호의 용어

-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 제8453호의 용어

-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 제8466호의 용어

-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 제90류 주 제2호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제90류 주 제3호

-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 제90류 주 제5호

-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 제9008호의 용어

-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 제9011호의 용어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 제9013호의 용어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9015호의 용어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 제9017호의 용어

-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 제도기·축소 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9024호의 용어

-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제9026호의 용어

-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9029호의 용어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제9106호의 용어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Ⅲ. 주요 쟁점 사항

제9031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관세율표상 투영기(projectors)의 분류는?
- 2) 제9031호의 용어에 규정한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 3) 제9029호의 기기와 결합된 그 밖의 측정·검사용 기기의 분류는?
- 4) 제9031호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 5) 제9031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1) 관세율표상 투영기(Projectors)의 분류는?

HS 관세율표에는 호의 용어에 ‘Projectors’라는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들 기기를 구별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8528호의 용어에 ‘프로젝터(Projector)’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는 렌즈와 같은 광학기기가 결합돼 있으나 전기적 특성과 효과를 활용해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다.

제9007호의 용어에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는 영화의 다이아스코픽(Diascopic)식 영사용의 정지형이나 휴대형의 기기로 광원·반사경·집광 렌즈·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갖고 있으며 필름상의 활동하는 영상을 스크린 위에 확대 투영하는 것이다.

제9008호의 용어에 ‘투영기(Image Projectors)’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는 슬라이드 투영기와 같이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제9011호의 용어에 ‘마이크로 영사용(Micro Projection) 광학 현미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영사기는 현미경과 결합돼 현미경에 의해 확대되는 상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투영하는 데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제9031호의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는 다양한 기계부품 등의 피검사물을 광학적으로 정확한 배율로 확대하고 투영해 스크린에서 그 형상이나 치수, 각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2) 제9031호의 용어에 규정한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제9015호의 용어에 ‘토지·수로·해양·수리계측기기와 거리측정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9031호 해설서에 예시된 수준기와 다림줄은 석공·목공·기계공이 건물과 건설 작업에서 수평면과

수직면을 측정하고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제9015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제9017호의 용어에 ‘분도기·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호로 분류되는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는 직경·깊이·두께·높이와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하학적 요소를 측정한다. 이들 기하학적 요소를 측정하는 기기는 당연히 제9017호로 분류한다.

다만 특정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탠드나 그 밖의 지지구 위에 고정 장착하거나, 신축성이 있는 관·케이블 등으로 기계나 그 밖의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기기는 수지식이 아니므로 제9017호에서 제외해 제9031호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제9017호로 분류되는 게이지(gauge)류는 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만이 이 호로 분류하므로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제거나 각도·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 플러그 게이지·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해 제9031호로 분류한다.

제9024호의 용어에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호에는 금속·목재·콘크리트·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나 판지·고무·플라스틱·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의 경도·탄성·항장력·압축성·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

다만 기계적인 부분품으로 만든 선(wire)·금속물품을 대상으로 단순히 폭·두께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로 수지식 길이 측정이 아닌 것은 제9031호로 분류하며, 이들 재료의 단순한 결합·균열·틈·흠의 검출용 기기도 기계적인 성질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9031호로 분류한다.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의 액면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체 물질의 액면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는 제9026호에서 제외해 제9031호로 분류한다. 다만 X선을 사용해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은 제9022호로 분류한다.

3) 제9029호의 기기와 결합된 그 밖의 측정·검사용 기기의 분류는?

제9029호의 용어에 ‘적산회전계(revolution counters)·생산량계(production counters)’를 규정하고 있다. 적산회전계(revolution counter)는 기계 부분의 회전수(예 : 축의 회전수)의 적산(count)용 계기이며, 생산량계는 길이의 측정(예 : 방직이나 연사), 기계 동작수의 계수(자동저울·펌프·방직기의 복침 등), 생산물의 계수(윤전기의 인쇄매수·컨베이어 벨트의 운반물품·은행권 등)에 특히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길이나 단위 수량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 적산회전계(revolution counter)와 유사하다.

이들 기기는 기하학적 요소의 측정과 관련이 높으므로 제9031호와 경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9031호의 면적계나 곡선계도 회전수 등의 합계량으로 측정·검사하며, 제9031호의 사 등급별 권취 릴(yarn grading winding reel)·토쇼미터(torsiometer)·이와 유사한 시험용의 기기는 적산회전계(revolution counter)를 갖추고 있다.

적산회전계나 생산량계가 별도로 제시될 경우 제9029호로 분류함은 당연하나, 만일 제9029호의 기기가 결합된 그 밖의 측정 검사용 기기는 제90류 주 제3호 등을 적용해 제9031호로 분류가 가능하다.

참고로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한 측정 검사용 기기의 분류에 있어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는 제9024호로 분류하며, ‘직물의 관리공정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기기[예 : 실의 균질성의 검사기, 정정기(warping-frame)나 권사기 등에서 실에 가해지는 팽팽함의 정도를 검사하는 스트레인 검사기, 실의 비틀림을 측정하는 연수계(yarn torsion counter)와 연진동기록계(torsiograph)]’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4) 제9031호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류 주 제2호(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규정) 나목에 따라 제9031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1호로 분류한다. 제9031호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검사기기의 커버와 케이스, 면적계용 암(planimeter arm), 다이얼컴퍼레이터(dial comparator)용 스탠드와 측정 테이블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90류 주 제5호에서는 “제9013호(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광학기기와 제9031호(제90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기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도 제9031호로 분류함에 유의해야 한다.

● 광학검사기기용 측정 테이블에 대한 부분품 위원회 분류 사례 ●

시행기관	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세번	제9031.90-9000호
품명	GRANITE STONE(자동광학검사기기용 측정 테이블)
물품 개요	○ 물품 개요
물품 설명	- TFT-LCD 자동 광학 검사용 장비에서 작업대 역할을 하는 모션 스테이지*(motion stage)에 장착되는 화강암으로 만든 평판 모양의 정반**

* 모션 스테이지 : 모터와 구조물(정반, 프레임, 제진대)로 돼 있으며 측정 대상물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작업대(검사대) 역할을 함

** 정반(surface plate) : 기계 부품의 조립이나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은 두꺼운 평판모양의 테이블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사진>

○ 제조공정 및 특성

- 원석(화강암) 채취 → 절단 → 치수가공 → 연마작업 → 다듬질 → 인서트(볼트 고정자리) 삽입 및 고정
- 신청물품인 정반을 수입해 리니어 모터와 센서, 레일을 부착한 후 전기케이블 베어와 이동자(mover; X·Y축 위치를 고정), 지지대(충격·제진 역할)를 조립해 공급하면 국내 다른 제조자가 측정 장치 등을 부착해 최종 완성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최종 완제품)

- 평판디스플레이(대형 TV용 LCD) 표면의 얼룩이나 찍힘, 스크래치와 같은 외형상 결함을 광학 카메라(CMOS 센서)를 이용해 검사하는 AOI(Automatic Optical Inspection) 장치부와 평판디스플레이 내부 전기접속 단락 여부를 정전용량 측정기(400kHz~800kHz 주파수 인가)를 이용해 검사하는 장치부가 함께 결합돼 있음.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6부 주 제3호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돼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의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s)이나 빔(beam)을 이용해 여러 가지 모양이나 치수의 검사, 면(surface)의 시험용에 사용되는 윤곽투영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 설명 부분에서는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면적계용 암·다이얼컴퍼레이터용 스탠드와 측정테이블을 예시하고 있음.

참고로 광학현미경이 분류되는 제9012호의 해설서 ‘부분품과 부속품’ 설명 부분에 현미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frame)과 그 구성 체임버(chamber)와 시료재물대(specimen stage)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TFT-LCD 검사장비에서 측정물이 올려지는 작업대(stage)로 검사장비의 일부를 구성하며, 장착될 장비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설계·제작돼 있어 조립 후 별도로 장비와 분리되거나 해체되지 않는 특수 정반이므로 장착될 검사장비에 전용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본건 물품이 전용되는 검사장비는 제9030호(정전용량 측정기기)와 제9031호(광학식 검사용 기기)에 분류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나 제90류 주 제3호(제16부 주 제3호 ‘복합기계’ 규정 준용)에 따라 주 기능을 수행하는 제9031호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5) 제9031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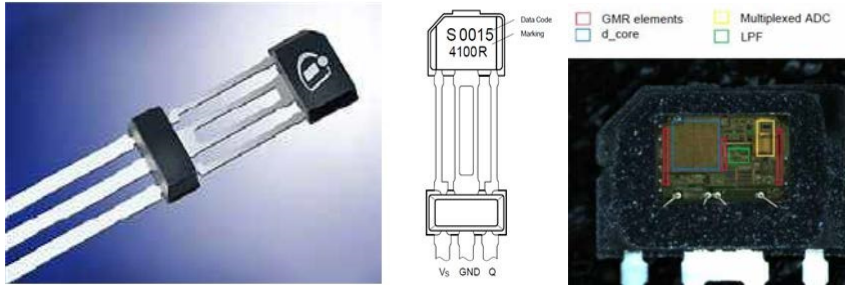
제17부에는 차량·철도·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17부로 분류한다.

그러나 분류에 있어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부분품 또는 엔진의 불균형과 검정용에 사용하는 균형시험용 기기와 테스트벤치, 옥탄가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 차량용 모터 시험기, 차량 진동시험기, 기어 시험기 등은 제9031호로 분류하므로 유의한다.

● 자동차 엔진 크랭크축(crankshaft)의 회전속도·위치·회전방향 검출 센서에 대한 위원회 분류 사례 ●

시행기관	2022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세번	제9031.80-9099호
품명	GMR Based Crankshaft Sensor
물품 개요	○ 물품 개요 - 거대자기저항(GMR, Giant Magnetic Resistance) 소자를 포함하는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IC)’ 1개와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2개가 각각 별도로 패키징돼 리드프레임 위에 장착된 센서
물품 설명	- (기능)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거대자기저항(GMR)의 특성을 이용해 자기장을 감지하는 센서의 기능을 수행 - (용도) 자동차 엔진 크랭크축(crankshaft)의 회전속도·위치·회전방향을 검출해 엔진 점화 제어(ignition control)와 점화불량 검출(misfiring detection) 등에 필요한 정보를 ECU에 전달

○ 물품 이미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31호의 ‘측정용의 기기’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본건 물품은 ‘측정용 브리지(measuring bridge)’의 일종인 ‘휘트스톤 브리지(Wheatstone Bridge)*’ 회로를 이용해 회전하는 크랭크축(shaft)의 움직임 감지해 내기 위한 센서로 제90류의 측정기기에 해당함.

* 4개의 저항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된 전기회로로, 알려지지 않은 저항값을 측정하는 데 사용됨(출처 : 물리학백과, 한국물리학회)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에 자기의 변동(magnetic variations)이나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의 변동 등을 이용해 ‘재료의 흠·균열, 결함 등을 검출하는 장치’나, 전기 저항치의 변화를 통해 ‘응력(stress)과 왜력(strain) 등을 측정하는 장치’, 힘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바꾸어 힘이나 하중을 감지하는 ‘로드셀(load cell)’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반도체(IC)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저항이 자계에 의해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해 엔진 크랭크 축(회전자)의 회전 속도나 방향, 위치 등을 감지(센서)해 내는 측정용 기기로, 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제8423호의 용어에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기는 주로 물품, 사람, 동물 등을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계수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다. 그러나 기계적 부분품을 평형 여부를 측정하는 기계와 수압기·압연기·재료시험기의 압축 응력(compression force)이나 인장 응력(tractive force)을 전기적으로 중량 단위를 측정하는 기기와 하중시험(항공기)용 동력계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다만 재료의 성질을 시험하는 동력계(dynamometer)는 제9024호로 분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8449호의 용어에 ‘모자 제조용 형(blocks)’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은 보통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며 모자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모자를 잡아 늘이는 형도 제8449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모자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머리의 윤곽을 뜨는 기계는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49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9031호로 분류한다.

같은 이유로 제8466호의 용어에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유피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피나 가죽 등의 표면의 불규칙면을 측정하는 장치는 제8466호에서 제외해 제9031호로 분류한다.

제8466호에는 ‘금속, 석재, 목재와 경질재료의 가공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계의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심출(centring)용구와 자(scale)의 눈금을 읽거나 조절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학적 장치를 갖춘 광학적 할출대(割出臺, dividing head)와 같은 부속기기를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따라 그 자체가 본래 광학적 장치인 경우에는 제외해 제90류의 해당 호로 분류하며 특히 윤곽투영기를 포함한 그 밖의 측정·검사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제9106호의 용어에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synchronous)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기(synchronous) 전동기로 전기회로의 개폐에 의해 발생하는 단시간의 현상 발현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형의 무브먼트가 없거나 동기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타이머는 이 호에서 제외해 제9031호로 분류되며, 지도곡선계(opisometers)와 같은 시계나 시계부품의 검사용 기기와 시계의 최종 검사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조 과실 대추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대추는 대추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의 일종이다. 다른 과일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으로 길이는 2~3cm 정도에 갓 수확한 햇과일의 무게는 10~13g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추는 대부분 적갈색인데 예전에는 모두 초록색 대추를 미리 수확한 뒤 잘 말려서 출하했지만, 최근 생대추를 과일처럼 판매하는 추세가 늘면서 붉게 익은 뒤에 따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추는 강한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룬다. 과당을 많이 함유해 당분 및 열량도 높다. 대추 100g 정도에 생과 기준 100kcal, 건조 과일 기준 270~300kcal 정도의 열량이다. 100g은 생과 기준 8~10개에 해당하니 다이어트 시 주의해야 한다.

대추의 효능은 염증 완화, 간 기능 개선, 골다공증 예방 등 다양한데, 특히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많아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 시토스타놀 성분이 함유돼 있어 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어서 달여 먹으면 냉증 치료에도 좋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린 것을 섭취하거나 물에 넣어 푹 끓여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한 건조 대추에 홍삼농축액, 물엿, 설탕, 인삼추출액을 도포한 것으로 제2008.99-9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 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씨를 제거해 슬라이스한 건조 대추로서 홍삼농축액 등을 첨가했으나 대추 육질 내부까지 균질하게 침투되지 않고, 특성이 미미하므로 건조한 대추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품에 해당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대추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0813.40-2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JUJUBE PREPARATIONS	2008.99-9000 (A 45%)	Jujubes	0813.40-2000 (W2 611.5%)

韓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성공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우리나라가 처음 운영을 시도하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올해 4월 24일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지구 궤도를 향해 성공리에 발사됐다.

초소형 군집위성이란 지구 관측, 통신, 우주 탐사 등 우주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지구 궤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 초소형 위성의 무리를 의미한다. 보통 100kg급의 초소형 크기와 무게가 특징이며, 여러 대가 군집 형태로 운영된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다수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훨씬 더 자주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상 획득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주도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세트렉아이가 협력해 초소형 군집위성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초소형 군집위성 10기를 더 발사할 예정이다. 이때는 외국 발사체가 아닌 한국 발사체인 ‘누리호’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는 모두 11대 위성이 군집 형태로 운영된다.

중전의 인공위성과 함께 앞으로는 촬영 장비를 갖춘 소형 군집위성들이 새로운 우주산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소형 군집위성은 지구 표면 전체를 살살이 촬영한 뒤, 원하는 지역의 이미지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군집위성을 구글 검색엔진에 빗대 ‘지구 검색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세율표에서 인공위성과 이번에 우리의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군집위성은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중 제8802호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에 분류될 것이다.

제8802호 해설서 제(2)호에서는 ‘우주선(spacecraft) : 이것은 대기권 밖으로 주행할 수 있는 수송 수단이다(예 : 통신위성이나 기상위성)’을, 제(3)호에서는 ‘우주선 발사체(spacecraft launch vehicle)’를, 제(4)호에서는 ‘서보비틀 발사체(suborbital launch vehicle)’를 예시해 설명하고 있다.

단 ‘포형 로켓(artillery rockets)·유도미사일과 전쟁용의 유사한 군수 물자’는 무기로서 관세율표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제9306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83호_2024.5.20.

최신개정법령

고시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공고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입법예고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외교부고시 제2024-3호, 2024.5.14.)

2016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조약 제2281호)”가 동 조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 통보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2023년 11월 28일자로 발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공고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17, 2024.5.17.)

(주)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포스코

나. 요청일자 : 2024년 3월 1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65호(2021.9.1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 인도네시아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및 그 관계사

- 대만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 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4년 5월 17일

나. 재심사 조사 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044-203-5873),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4))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세종시 도움6로 42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입법예고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고시 제2023-51, 2023.8.25.)

1. 행정규칙명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사항* 및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음

3. 주요 개정내용

가.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 명확화(제15조 제3항)

- 검사대상화물 :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 특송화물 :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나. 「관세법」 제140조 제7항에 따라 하역제한 대상물품 규정(제16조의2 신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 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다. 항공 특송화물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제21조 제1항)

-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에서 30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

*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

라. 용어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복'을 '적재공간', '시봉'을 '봉인실시', '선(기)용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용어 정비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15조	○ 「관세법」 제140조 제5항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의2	○ 「관세법」 제140조 제7항 세관장은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반송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	○ 「관세법」 제135조 제2항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시행일자 : 공포한 날

6. 의견제출 방법

- 1)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2) 담 당 자 : 김은아 주무관
- 3) 제출기한 : 2024. 6. 7.(금)
-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27
(팩스) 042-481-7819
(전자우편) kea518@korea.kr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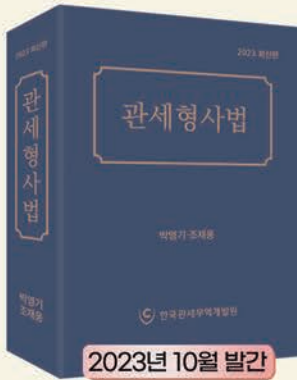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10%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